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2654

제출일자 : 2025. 3. 21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○ 학대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, 초기상담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One-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'달성군 학대피해아동 쉼터'를 운영할 예정이며,

○ 해당 분야의 전문성, 노하우,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,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 4조의3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시 설 규 모	종사자수	비 고
달성군 학대피해아동 쉼터	달성군 관내 1개소	84.9m^2	6명	

※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입소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소를 비공개 하고자 함

나.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

○ 주요 위탁사무

-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
- 피해아동 생활지원 : 의복 등 생필품 지원,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
- 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 : 심리검사, 개별심리치료,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진료 지원
- 교육 및 정서지원 : 학업지도, 안전교육, 문화체험, 체육활동 등

다. 조직 및 구성

구 분	계	시설장	보육사	임상치료사
인 원	6	1	4	1

라. 위탁기간: 5년(2025. 7. 1. ~ 2030. 6. 30.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 진행

바. 민간위탁 추진일정

- 2025. 3. : 민간위탁 계획수립
- 2025. 4. : 군의회 동의
- 2025. 4. ~ 6. :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

사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○ 별도첨부

아. 향후일정

○ 2025. 4. : 군의회 동의

○ 2025. 4. ~ 5. :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

○ 2025. 5. ~ 6. :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

○ 2025. 6. : 선정결과 공고 및 협약체결

○ 2025. 7. : 위탁 시행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「아동복지법」제53조의2 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)

○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

○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

○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제9조

나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2025년 예산 : 220백만원(국 60백만원, 시 160백만원)

참고 **상위 및 관계 법령**

□ 아동복지법

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, 치료,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, 아동학대 발생건수,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
2.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·치료
3.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·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 3. 7., 2008. 11. 5., 2020. 1. 3.>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. 1. 3.>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(전문개정 2023. 4. 28.)

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(본조신설 2023. 4. 28.)

제4조의3(의회동의)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(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24. 4. 1.)

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.(개정 2024. 4. 1.)

1.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3.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

4. 수탁기관 선정방식
5. 민간위탁 추진일정
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7.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8.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
9.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

제9조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(이하 “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
2. 피해아동 생활지원
3. 상담 및 치료
4. 교육 및 정서 안정 지원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쉼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
2.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

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

1 기본 검토사항

대상사무	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(안)
민간위탁 추진목적	○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안정, 보호·치료 등 원가정 복귀까지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,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,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
위탁근거	○ 법적 근거 -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의 2 -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-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-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9조
위탁내용	○ 추진경위 - 아동복지법 및 자체방침 등 ○ 위탁기간: 5년(2025. 7. 1. ~ 2030. 6. 30.) ○ 위탁내용 -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 쉼터 생활 지원 -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·상담 치료 -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지원 - 그 밖에 달성군이 정하는 업무

적 정 성 검 토	○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: 위탁운영이 적합 -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지원 세부기준에 보면 국고 보조대상에 대해 **“아동복지법 제 53조2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 쉼터 중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시설”**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절감 측면에서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이 효율적임 ○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: 적정 - 아동복지법 제 53조의 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)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, 인력채용 관리 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함 ○ 경제적 효율성 : 적정 -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기본적 기능(숙식제공, 심리상담・치료, 학습 및 정서지원)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며,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확보 ○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: 적정 - 피해아동의 심리검사, 상담・아동관리 능력, 생활지도 등의 아동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접근 등 전문 종사 인력의 고용과 관리를 통해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함 ○ 성과 측정의 용이성 : 적정 - 시설평가 및 정기점검을 통한 시설 운영의 성과를 측정 ※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43조의 2 제1항 ○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- 위탁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 및 감독을 통해 관리하고,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설의 민주적 운영, 투명성 제고 및 입소아동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음 ※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51조(지도・감독 등), 제43조의 2(시설의 평가) 「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12조(지도・감독)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36조(운영위원회)

	○ 위탁사무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- 달성군 아동학대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운영 관리면에서 효율적임 ○ 공익성(공공성)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- 주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・・(부) -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(여) - 상시·지속적 사무인지 여부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(여)
기존 수탁기관 및 선정방법	○ 신규 위탁
수탁기관 선정방법	○ 공모를 받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수탁기관 선정
민간위탁금 ***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**	○ 2025년 예산 : 220백만원(국 60백만원, 시 160백만원) ※ 2026년 예산(예상) : 345백만원(국 104백만원, 시 241백만원)
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	○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달성군 관내 보호체계 강화 ○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 제고
전문가 의견	○ 민간위탁 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의 국고 지원이 가능하며,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가진 민간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 결정